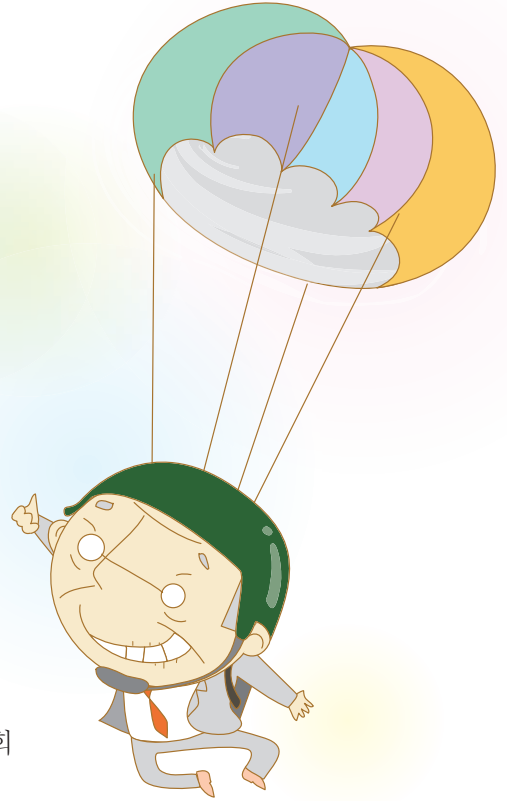


LP가스충전소

노인충전원 파견 기본계획(안)

한국LP가스공업협회

협회는 LPG충전소의 인력난 및 노인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공동으로 LPG충전소 노인충전원 파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내용을 게재한다.



I 필요성

- LP가스충전소의 노인충전원 직종을 노인적합형 일자리로 개발·보급하여 신규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의 사회 참여 기회 제공에 기여
- LP가스충전소를 추가 수요처로 개발·보급하여 수행기관의 수요처 개발을 지원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참여노인에게 제공하는데 기여
- 현재 진행 중인 노인주유원 인력뱅크를 LP가스충전소에 적용하여 인력풀 제공을 통한 One-stop Service(모집, 교육, 파견, 사후관리 등) 제공으로 수요처와 참여노인의 만족도 제고

II. 현황

LP가스충전소 현황

- ⊗ 규 모 : 1,500여개
 - ⊗ 종사자수 : 5,000여명(산출근거 : 충전소당 평균 3~4명)
 - ⊗ 근무조건 : 월급제 or 시간제(대부분 월급제 및 4대보험 적용)
 - ⊗ 급여수준 : 월급여 80 ~ 90만원, 시급 3770원이상
 - ⊗ 근무형태 : 2~3교대 운영(충전소의 특성상 24시간 영업이 대부분)
 - ⊗ 필수교육 : 액화석유가스충전원 교육이수 필수
- ※ 현재 충전원 채용 시 근무기간 중 해당지역의 안전교육(가스안전교육원) 일정에 맞추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교육을 이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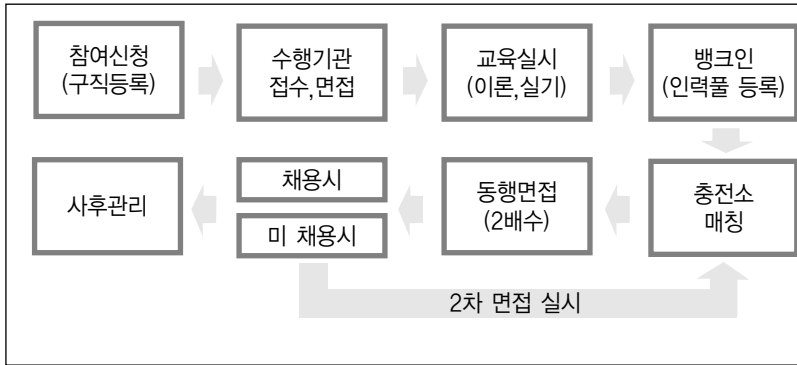
III 추진개요

- 사업대상 : 1,500여개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소속 충전소
- 파견목표 : 150명(60세 이상 노인파견)
- 사업기간 : 2008년 7월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역할
 - 사업계획 및 확대방안 마련
 - 수행기관과 협회소속 충전소간의 연계
 - 가스충전원 파견에 관한 교육기자재 및 교육비 지원
 - 노인주유원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 한국LPG가스공업협회 역할
 - 사업 안내 및 홍보
 - 지속적인 공문과 협회소식지를 통한 노인충전원 안내
 - 임원단 및 소속충전소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
 - 소속 회원 충전소 정보 제공(수행기관별 수요처 개발에 활용)
 - 가스충전원 사업 공동 모니터링 및 평가

IV 세부추진계획

사전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안내 및 홍보 ○ MOU체결 준비 및 협약 ○ 가스충전원 인력풀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주유원사업과 동시진행 ○ 고용촉진장려금 활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충전원 희망자 고용지원센터 구직등록 - 고용지원센터 담당자 동행면접 협조요청 	8월
노인주유원 교육 및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양, 직무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급기자재 활용(개발원 동영상 및 매뉴얼) - 카드결제 집중교육 실시 	8월~
파견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노인 액화석유가스충전원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지원 (1인 17,000원) ○ 참여노인 사후관리(직무적응, 상담 등) ○ 참여충전소, 협회, 수행기관 사후관리 	8월~
평가 및 확대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평가 및 확대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ot분석을 통한 충전소 모집방안마련 ○ 모범 및 우수사례 전파 ○ 노인충전원 취업실태조사 	12월

V 파견체계도



VI 인센티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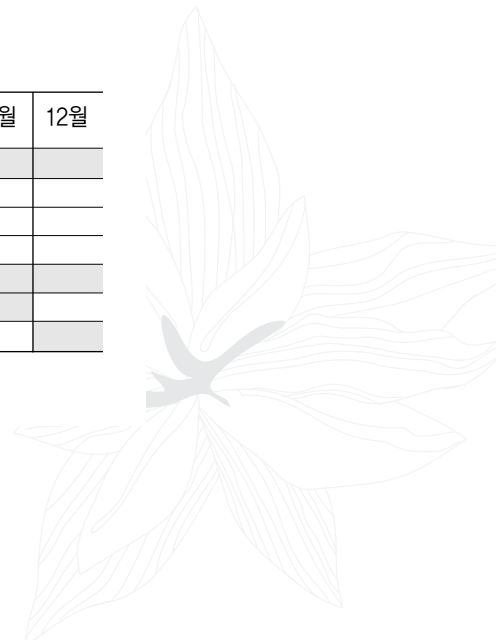
- 액화석유가스충전원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교육비 17,000원
 - ※ 교육비 지원시 소요예산 : 사업 목표 150명 기준 255만원
 - 지원대상 : 액화석유가스충전원 교육 이수후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 지원방법 : 교육 수료 후 소정양식으로 교육비 신청시 사업장에 지급

액화석유가스충전원 교육 관련내용

- ※ 관계법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9 제4호
- ※ 교육필수 : 상기 법령에 의해 가스충전원은 반드시 교육 이수해야 함
- ※ 교육비용 : 1인당 17,000원(1일 6시간 소요)
- ※ 교육주관 : 가스안전교육원

VII 세부추진일정

내 용	시 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스충전원 공문시달 및 홍보							
한국LPG가스공업협회 대상사업설명회							
MOU체결 준비 및 협약							
가스충전원 모집 및 교육							
가스충전원 채용연계 및 파견							
노인충전원 취업실태 조사							
사업평가 및 사업확대방안 마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요건 및 지원금액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한 자 중, 아래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구직자를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알선을 받은 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실업기간	지원대상기업	지원금액('08년 기준)	
			최초 6월	나머지 6월
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미만)중 소득 및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2004-42호)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나.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다.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1개월	대규모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300,000원	15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 이하)	600,000원	300,000원
	2. 여성실업자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1개월	대규모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600,000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개월	대규모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600,000원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3개월	대규모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300,000원	15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 이하)	600,000원	300,000원
5. 29세 이하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청년실업자)	3개월	우선지원대상기업	450,000원	300,000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500인 이하)	600,000원	300,000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3개월	대규모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600,000원	300,000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8.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9.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장기실업자)	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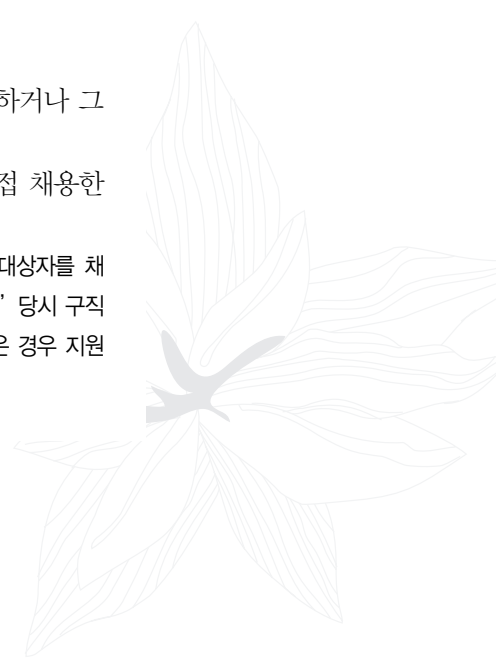
■ 기타 지원 요건

1. 근로자

- ① 구직등록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었을 것(위 실업기간 참조)
 - ※ 실업기간 동안 근무한 이력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함.
 - ②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없을 것.(계약직 근로자 지원제외)
 - ③ 비상근 촉탁근로자 제외
 - ④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것.
- 【참고】현행 최저임금액 (2008년 기준)**
- 시간급 3,770원
 - 월 환산액 : 주44시간 852,020원, 주40시간 787,930원

2. 사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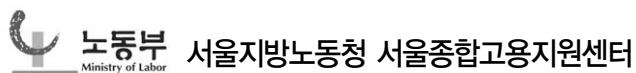
- ①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할 것.
 - 【참고】감원방지기간이란?**
대상자 채용 전 3개월 ~ 채용 후 12개월 기간동안 사업장 전체 근로자 중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자가 발생하면, 지원이 제한되며 사후 적발시 기 지급된 지원금도 회수함.
 - 【예시】**채용일이 2008년 5월 1일인 경우 감원방지기간 : 2008년 2월 2일 ~ 2009년 4월 30일
 - ※ 지원금 대상자가 중도 퇴사하여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도 위 감원방지기간은 채용 후 12월까지 계속 적용됨.
 - 【참고】고용조정이란?**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사업·부서의 폐지 등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 ② 최종 이직 전 사업장이나 관련 사업장이 아닐 것.
 - 【참고】관련 사업장이란?** 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분할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 ③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 할 것 (알선없이 직접 채용한 구직자는 지원금 대상이 아님)
 - ※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지원금대상자만을 알선하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금 대상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면접시 구직자 본인과 실업기간 등 확인 필요.(‘알선’ 당시 구직자의 실업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며, ‘알선’ 당시 실업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지원금 대상이 아님)



■ 신청방법

- ① 채용 월의 다음달부터 매월, 아래의 서류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용보험법 별지 제50호 서식】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2. 근로계약서 사본 (최초 신청시에 한함)
 3. 신청당월 임금대장 사본
 4. 급여이체확인서 사본 (근로자 및 사업주 통장 사본)
 - 실제 임금 지급여부 확인 용도
- 【참고】급여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인 사업장의 7월8일 채용일 경우
 최초 지원금 신청기간 : 7.8 ~ 8.7 → 7월, 8월 임금대장 사본, 급여이체확인서 제출
5.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 구직등록한 경우 구직등록필증 사본 등 “구직신청”과 “알선” 증명서류
6. 회사 통장(앞면) 사본 (최초 신청시 또는 변경시에 한함)
 - 장려금을 입금 받을 회사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임.
7. 기타 지원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 ※ 여성가장의 경우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등)
 -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 이직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서류 제출시 신청서를 제외한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 100-760) 서울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4층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 (02) 2004-7371~3, 7376~7, 7979
 팩스 : (02) 6915-4018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안내 상세 내용

□ 지급 제한

- 근로계약기간이 단기간인 근로자 등 다음각호의 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는 지급제한(시행령 제26조제1항 본문,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각호)
-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자.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지급제한 예외규정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55세이상)하는 경우
 - Ⓢ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 비상근 촉탁근로자(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2호)
- 3.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같은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호)
- 최종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부 등)에게 고용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임금체불, 보험료 연체 등이 있는 경우 지원 제외
- 정부 등이 시행하는 지원금 수혜시 지원 제외

□ 장려금 지원을 위한 필요조건

- 사업장(주유소)부문
 - 당해 사업장의 전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



- 주 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무 / 최저임금 이상 시급(3770원 이상)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이상)
- 지원대상자 출근부 작성 및 장려금 신청시 출근부 사본제출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안내

직업안정기관(고용지원센터)의 알선에 의해 채용

1단계	2단계	3단계
알선에 의한 채용	임금지급 후 장려금신청	사실관계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고용지원센터

기타 취업알선 기관 등의 알선에 의해 채용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인신청 및 기타 관련기관의 알선 ※알선확인서 발급	알선대상자 채용 및 임금지급	알선확인서 및 장려금 신청서 제출	요건확인 후 장려금 지급
기타 취업알선기관 (고령자취업알선 센터 등)	사업주	사업주→ 고용지원센터	고용지원센터

- 취업 기관의 종류: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 한국선원복지센터, 여성희망일터지원본부, 근로복지공단, 서울특별시 16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부산광역시 3개 취업알선센터, 경상남도 4개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전라북도노인일자리추진본부, 안양시노인복지센터